

의안번호	2210594
의 퇴 인	전용기의원
회 답 일	2025.6.27.
추 계 번호	25D298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보수 관련 규정을 변경·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80억 7,300만원, 2031년 801억 9,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3,476억 900만원(연평균 695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청원경찰 처우 개선 (안 제6조제2항)	58,073	63,114	70,058	76,165	80,199	347,609	69,5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2항 (청원경찰경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고 수당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수당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1. 재직기간 6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6년 이상 1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13년 이상 21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21년 이상: 경위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2항 (청원경찰경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보수 산정 시 준용하는 경찰공무원 직급을 다음 표와 같이 규정

[표 2] 현행법과 개정안비교

현행		개정안	
재직기간(년)	보수산정 직급	재직기간(년)	보수산정 직급
15년 미만	순경	6년 미만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6년 이상 13년 미만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13년 이상 21년 미만	경사
30년 이상	경위	21년 이상	경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인 청원경찰 9,616명이 2023년 이후 추계기간 동안 중도 퇴직 없이 재직하며, 재직기간이 31년에 도달한 경우만 다음연도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
- 청원경찰은 순경3호봉으로 시작하여 재직기간 1년마다 1호봉씩 증가하며 직급이 상승하는 경우 1호봉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신규 채용되는 청원경찰 수는 전년도에 재직기간 31년에 도달한 인원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수는 감소하는 추세

-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3~2025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2.4%를 적용한 경찰공무원 봉급표 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를 활용
 -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제1호다목은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봉급인상시 이에 연동되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증액을 고려하며,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2031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2023년 12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총 9,616명임

[표 3] 재직기간별 청원경찰 현황: 2023년 12월 기준

(단위: 년, 명)

재직기간	인원	재직기간	인원
0~1	785	16	300
1	516	17	225
2	555	18	188
3	868	19	174
4	699	20	173
5	451	21	96
6	333	22	88
7	287	23	96
8	319	24	79
9	257	25	103
10	263	26	196
11	175	27	207
12	185	28	203
13	207	29	195
14	229	30	225
15	259	31	680
총계	9,616		

자료: 경찰청

□ 2023년 12월 기준 재직년수별 청원경찰 수를 활용하여, 개정안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보수 관련 규정을 변경·적용하는 경우, 2027년 청원경찰 인건비는 4,117억 5,200만원으로, 현행법 적용 시 인건비에 비해 513억 3,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됨

[표 4] 청원경찰 직급, 승진 및 경찰공무원 보수 적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년

재직 기간	현행법				개정안				추가 재정 소요 (백만원, B-A)
	직급 호봉	대상자 수 (명)	봉급 (원)	인건비 (백만원, A)	직급 호봉	대상자 수 (명)	봉급 (원)	인건비 (백만원, B)	
6	순경9	555	2,629,095	21,741	경장8	555	3,051,461	25,234	3,493
7	순경10	868	2,716,022	35,363	경장9	868	3,140,171	40,885	5,522
8	순경11	699	2,799,174	29,545	경장10	699	3,225,525	34,045	4,500
9	순경12	451	2,881,382	19,752	경장11	451	3,307,104	22,671	2,918
10	순경13	333	2,960,549	15,084	경장12	333	3,385,432	17,248	2,165
11	순경14	287	3,037,410	13,338	경장13	287	3,461,140	15,198	1,861
12	순경15	319	3,110,810	15,183	경장14	319	3,531,709	17,237	2,054
13	순경16	257	3,181,799	12,511	경사14	257	3,952,607	15,542	3,031
14	순경17	263	3,251,215	13,083	경사15	263	4,027,685	16,207	3,124
15	경장17	175	3,461,035	9,267	경사16	175	4,098,359	10,973	1,706
16	경장18	185	3,528,144	9,986	경사17	185	4,165,678	11,791	1,805
17	경장19	207	3,592,631	11,378	경사18	207	4,229,956	13,397	2,018
18	경장20	229	3,654,078	12,803	경사19	229	4,290,563	15,033	2,230
19	경장21	259	3,712,588	14,712	경사20	259	4,349,284	17,235	2,523
20	경장22	300	3,768,897	17,299	경사21	300	4,404,963	20,219	2,920
21	경장23	225	3,822,479	13,159	경위21	225	4,525,759	15,580	2,421
22	경장24	188	3,874,279	11,144	경위22	188	4,590,666	13,205	2,061
23	경사24	174	4,316,883	11,492	경위23	174	4,652,217	12,385	893
24	경사25	173	4,368,472	11,563	경위24	173	4,711,252	12,470	907
25	경사26	96	4,418,070	6,489	경위25	96	4,767,456	7,002	513
26	경사27	88	4,459,908	6,005	경위26	88	4,818,941	6,488	483
27	경사28	96	4,498,915	6,608	경위27	96	4,862,981	7,143	535
28	경사29	79	4,536,664	5,483	경위28	79	4,905,448	5,929	446
29	경사30	103	4,572,840	7,206	경위29	103	4,945,504	7,794	587
30	경위30	196	4,883,533	14,645	경위30	196	4,983,148	14,943	299
31	경위31	207	4,918,975	15,579	경위31	207	5,019,324	15,897	318
합계		7,012	-	360,418	합계	7,012	-	411,752	51,333

주: 인건비 총액은 봉급에 12를 곱하고, 재직년도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를 고려하여 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7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2028년부터 2031년까지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보수를 추정하고,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5.3월)한 공무원 기관부담금요율¹⁾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산정

[표 5] 보수 및 기관부담금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보수	51,333	55,757	61,842	67,176	70,675
기관부담금	6,740	7,357	8,216	8,988	9,524
합계	58,073	63,114	70,058	76,165	80,1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보수 관련 규정을 변경·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80억 7,300만원, 2031년 801억 9,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3,476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청원경찰 처우 개선	58,073	63,114	70,058	76,165	80,199	347,6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2027년 13.130%, 2028년 13.194%, 2029년 13.286%, 2030년 13.380%, 2031년 13.476%

IV. 부대의견

- 2023년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인 청원경찰 9,616명이 2023년 이후 추계기간 동안 중도 퇴직 없이 재직하며, 재직기간이 31년에 도달한 경우만 다음연도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봉급에 연동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은 고려되지 않아,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